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5
------------	-----

2016. 03. 0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2월 2일 김정태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5년 12월 4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3.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정태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경복궁 서측 및 북촌일대 등 총 7개 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전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의 희생과 소외가 요구됨에 따라 역사·전통문화 보전과 주민의 공존·상생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한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옥밀집지역 발전방안 및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모색해왔음.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한옥 수선 지원 금액 상향조정”,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내용 확대”, “한옥 지원기금 설치·운영” 등 대안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방형 한옥”을 “서울 공공한옥”으로 명칭변경함(안 제2조제5호).
- 한옥의 전면수선 및 신축시 비용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함.
  - 전면수선(외관)의 경우 공사비용 3분의2 범위안에서 보조 8천만원까지 및 용자 6천만원까지로, 전면수선(내부)의 경우 용자 6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
  -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외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가목).
- 한옥의 부분수선시 보조지원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면수선이나 신축을 하지 않아도 부분수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전면수선이나 신축시 비용지원을 받은 동일 한옥에 대하여 재지원 가능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안 제8조제2항제4호).
- 한옥의 전면수선이나 신축시 임시이주를 위한 전세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1년까지 용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용자지원조건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5호, 안 제8조제4항).
-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학자금 등 관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한옥거주자에 대해 대중교통비용(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 시장은 한옥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 한옥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할 수 있도록 한옥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참조
- 다. 기 타 : 일부개정조례안(별첨), 담당부서별 검토의견(별첨)

### 4.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개정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수선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등록한옥 거주민 지원확대, 한옥지원기금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2월 2일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공동의 발의로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가. 개방형 한옥을 공공한옥으로 명칭변경(안 제2조제5호)

- 당초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SH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 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으로 정의된 “개방형 한옥”을 “서울 공공한옥”으로 명칭을 변경함.

## 나.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안 제8조)

- 이 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외관 전면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8천만원 보조 및 추가 6천만원까지 용자 받을 수 있고, 내부 전면수선 시 최고 6천만원까지 용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였으며,
-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외관에 대해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총 1억원까지 보조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한옥의 부분수선시 보조지원 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전면수선이나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지 않아도 외관, 내부, 지붕, 창호, 바닥, 담장 등 부분수선을 위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옥에 대한 재지원 최소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키되, 천재지변시에는 최소기간과 무관하게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이 밖에도 임시 이주비용 용자지원을 신설하여 전면수선 또는 신축의 경우 이주를 위한 전세금을 최대 1년 이내로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전면수선	외부	6천만원 (보조)	8천만원(보조) (보조금 이외 추가금액 6천만원 한도내 용자)
	내부	4천만원 (용자)	6천만원 (용자)
비한옥의 한옥 신축	외부	8천만원 (보조)	1억원 (보조)
	내부	2천만원 (용자)	좌동
부분수선		전면수선 또는 비한옥의 한옥신축 지원받아 5년 경과 후 1천만원 (보조)	외관, 내부, 지붕, 창호, 바닥, 담장 등 부분수선시 2천만원 (보조)
동일한옥 지원 최소기간		20년 (부분수선 5년)	10년 (부분수선 5년) ※ 천재지변은 제외

-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주관부서(예산담당관)에서는 보조금 및 융자금 한도액의 인상 및 동일한옥 지원 최소기간 단축에 따른 지원이 과다하고, 이주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한옥 용자 및 보조금액의 증액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총 112억 6,900만원, 연평균 22억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지원금액인 15억 3,600만원보다 약 7억 1,8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용자금 회수	295	295	295	328	328	1,541
	이주비용 회수	-	500	500	500	500	2,000
	<b>소계(a)</b>	<b>295</b>	<b>795</b>	<b>795</b>	<b>828</b>	<b>828</b>	<b>3,541</b>
세출	한옥수선 보조금지원 추가	1,320	1,320	1,320	1,320	1,320	6,600
	한옥수선 용자금지원 추가	1,142	1,142	1,142	1,142	1,142	5,710
	임시 이주비용 용자	500	500	500	500	500	2,500
	<b>소계(b)</b>	<b>2,962</b>	<b>2,962</b>	<b>2,962</b>	<b>2,962</b>	<b>2,962</b>	<b>14,810</b>
<b>□ 총 비용(b-a)</b>		<b>2,667</b>	<b>2,167</b>	<b>2,167</b>	<b>2,134</b>	<b>2,134</b>	<b>11,269</b>

자료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10
보조금	1,140	1,200	1,200	827
용자금	507	370	616	283
합계	1,647	1,570	1,816	1,110

자료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요컨대, 개정조례안의 용자 및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추계 되었으나,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이주에 따른 용자지원에 있어서 용자금액의 한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안 제12조)

-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한옥거주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극 도입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한옥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조항 및 한옥거주자 대 종교통비용 지원조항, 기반시설 설치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한 바, 이는 한옥밀집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거주가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임.
  - 다만, 한옥의 수선 및 신축, 부분수선 등 용자 및 보조금 지원과 조세감면·이주비 지원 등 개별한옥 중심의 지원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라. 한옥보전기금 설치(안 제17조)

- 최근 2015년 6월 발표한 제3기 「서울한옥자산선언」<sup>1)</sup>에 따라 서울전역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와 지원확대, 한옥 공공건축물 신축 등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한옥보전기금 혹은 특별회계를 두어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1) 제3기 「서울한옥자산선언」은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 수립된, 2020년을 목표로 한 한옥정책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한옥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7가지 주요 실천과제를 담고 있음.

○ 「지방자치법」 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한옥보전기금설치에 대한 법적 제약 요소는 없음.

- 다만, 이 개정조례안과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하며,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재원이 충당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기타 의견

○ 사업주관부서인 주택건축국(한옥조성과)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제3조의2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의 융자지원, 교육 및 훈련,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명시하고, 제15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하여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 및 사무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음.

- 또한, 이 개정조례안 중 특별회계 설치, 세제·대중교통·학자금 등 지원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재무국, 도시교통본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협의를 필요하다는 의견(붙임 2)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 종합된 내용

---

2)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으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심사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25
----------	-----------

2016년 3월 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수정이유

- 한옥자산선언에 따른 한옥보전구역 신설 및 한옥수선 비용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며,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 정정 등 보완사항을 반영함.

## 2. 수정주요내용

-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9호),
-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며(안 제3조의2),
-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및 한옥수선기간 동안 서울 공공한옥을 임시거처로 활용하도록 하며(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 한옥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항)
- 공공한옥의 민간위탁 운영사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 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의 수선, 용자지원, 교육·훈련, 홍보 및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단서 외의 본문 중 “8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같은 목 단서 중 “6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천만원”을 현행과 같이 “4천만원”으로 한다.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제2호가목의 “1억원”을 현행과 같이 “8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관, 내부, 지붕, 창호, 바닥, 담장”을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로하며,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4호 단서 외의 본문 중 “10년”을 “20년”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안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융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부속토지”를 “부속토지를”로 하고, 같은 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단을 현행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 5. 한옥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 ⑥ 제4항의 운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⑦ 시장은 제4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제7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할 경우에는 문

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항의 용자지원조건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공사완료신고서 제출 전인 한옥의 경우 개정된 제8조제2항의 비용지원 한도를 적용한다.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의 수선, 용자지원, 교육·훈련, 홍보 및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의 전면수선 등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  
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  
만원까지 보조지  
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  
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  
지 용자지원

2. 비한옥을 한옥으  
로 신축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  
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  
만원까지 보조지  
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  
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  
지 용자지원

-----

가. -----  
-----  
----- 8천  
만원-----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  
에 대하여는 6천  
만원 한도 내 용  
자지원)

나. -----  
-----  
---- 6천만원----

2. -----  
-----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  
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조지원

나. (현행과 같음)

-----

가. -----  
-----  
----- 6천  
만원-----  
--(-----  
----- 2천  
만원-----  
-----)

나.(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4.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3. -----  
----: 외관, 내부, 지붕, 창호, 바닥, 담장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4. -----  
-----  
-----  
-----  
----- 10  
년-----  
-----  
--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축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은 제한연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5. 임시 이주비용 용자지원 :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옥의 전면수선이나 신축의

3. -----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  
-----  
-----1천만원  
-----

4. -----  
-----  
-----  
-----  
----- 20년  
-----  
-----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경우에는 이주를 위한 전세금을 용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용자액의 용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용자 지원조건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제1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

제1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



<신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④ 시장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생략)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

〈신설〉

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신설〉

⑥ 제4항의 운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신설〉

⑦ 시장은 제4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⑧ 시장은 제7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제17조(한옥보전기금)

<삭제>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개정사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의 용자지원조건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  
례 시행일 기준으로  
공사완료신고서 제출  
전인 한옥의 경우 개  
정된 제8조제2항의  
비용지원 한도를 적  
용한다.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개방형 한옥”을 “서울 공공한옥”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의 수선, 용자지원, 교육·훈련, 홍보 및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 내  
용자지원)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  
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을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  
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  
가할 수 있다.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  
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⑥ 제4항의 운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⑦ 시장은 제4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7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항의 용자지원조건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공사완료신고서 제출 전인 한옥의 경우 개정된 제8조제2항의 비용지원 한도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p> <p>1. ~ 4.(생략)</p> <p>5. <u>“개방형 한옥”</u>이란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에스에이치(SH)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을 말한다.</p> <p>6. ~ 8.(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b>제2조(정의)</b></p> <p>1.~ 4.(현행과 같음)</p> <p>5. <u>“서울 공공한옥”</u>----- ----- ----- ----- ----- ----- ----- ----- ----- -----</p> <p>6. ~ 8.(현행과 같음)</p> <p>9. <u>“한옥보전구역”</u>이란 한옥밀집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p> <p><b>제3조의2(시장의 책무)</b> <u>시장은 한옥의 수선, 용자지원, 교육·훈련, 홍보 및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통</u></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 지원</p> <p>나. (생략)</p> <p>2. (생략)</p> <p>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p>	<p><u>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단, <u>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u>)</p> <p>1.----- 가. ----- ----- ----- -----(다만, <u>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u>)</p>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u>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u></p>

현행	개정안
<p>4.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른 용자액의 용자 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p> <p>⑤ ~ ⑦ (생략)</p> <p>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p> <p>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p>	<p>4. ----- ----- ----- -----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p> <p>① -----</p>



현 행	개 정 안
<p>바에 따라 <u>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 ③(생략)</p> <p>〈신설〉</p>	<p>----- <u>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④ <u>시장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76 987 788 1025">〈신설〉</p>	<p data-bbox="855 286 1425 925">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 (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data-bbox="855 994 1425 1093">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data-bbox="871 1126 1425 1933"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71 1126 1425 1225">1.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data-bbox="871 1258 1425 1357">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li> <li data-bbox="871 1391 1425 1543">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li> <li data-bbox="871 1576 1425 1675">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li> <li data-bbox="871 1709 1425 1807">5. 한옥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li> <li data-bbox="871 1841 1425 1939">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li> </ol>

현행	개정안
<p data-bbox="676 286 790 331">〈신설〉</p>	<p data-bbox="836 293 1426 696">⑥ 제4항의 운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p>
<p data-bbox="676 768 790 813">〈신설〉</p>	<p data-bbox="836 768 1426 1111">⑦ 시장은 제4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 data-bbox="676 1189 790 1234">〈신설〉</p>	<p data-bbox="836 1189 1426 1585">⑧ 시장은 제7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p>